

# 첨부 1.

## □ 산정 예시 1

▶ 전제조건 (민간 출자지분배당액이 민간 제시이윤율보다 큰 경우)

총사업비	개발이익	민간 출자지분율	민간 제시이윤율	이익환원금액비율
①	②	③	④	⑤
1억원	2천만원	50%	6%	30%

※ 총사업비에 공사부담분이 있을 경우 민간이윤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 적용

### ① 1차 배분

- 공사 출자지분배당액 = 2천만원 × 50% = 1천만원
- 민간 출자지분배당액(⑥) = 2천만원(②) × 50%(③) = 1천만원(총사업비의 10%)

### ② 2차 배분

- 초과한도금액(⑦) = 1억원(①) × 6%(④) = 6백만원
- 민간 출자지분배당액(⑥)이 민간 제시이윤 6백만원(⑦)을 초과할 수 없음
- ∴ 민간참여자 6백만원(⑦), 초과금액 4백만원은 성남시 특별회계 납입

### ④ 3차 배분

- 민간 이익환원금액(⑧) : 6백만원(⑦) × 30%(⑤) = 1.8백만원
- 민간 최종 배분 = 6백만원(⑦) - 180만원(⑧) = 4.2백만원

∴ 최종 개발이익 배분은 다음과 같다.

단위 : 백만원, %는 총사업비 기준

구분	개발이익	민간참여자	公社	市 특별회계	비고
1차 배분	20(20%)	10(10%)	10(10%)	-	
2차 배분		6(6%)	-	4(4%)	민간제시이윤율
3차 배분		4.2(4.2%)	1.8(1.8%)	-	이익환원금액
최종 배분	20(20%)	4.2(4.2%)	11.8(11.8%)	4(4%)	

□ 산정 예시 2

▶ 전제조건 (민간 출자지분배당액이 민간 제시이윤율보다 작은 경우)

총사업비 ①	개발이익 ②	민간 출자지분율 ③	민간 제시이윤율 ④	이익환원금액비율 ⑤
9천만원	9백만원	50%	6%	30%

※ 총사업비에 공사부담분이 있을 경우 민간이윤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 적용

① 1차 배분

- 공사 출자지분배당액 = 9백만원 × 50% = 4.5백만원
- 민간 출자지분배당액(⑥) = 9백만원(②) × 50%(③) = 4.5백만원(총사업비의 5%)

② 2차 배분

- 초과한도금액(⑦) = 9천만원(①) × 6%(④) = 5.4백만원
- 민간 출자지분배당액(⑥) 4.5백만원 < 초과한도금액(⑦) 5.4백만원
- ∴ 민간참여자 4.5백만원(⑥), 성남시 특별회계 납입금액 없음

④ 3차 배분

- 민간 이익환원금액(⑧) : 4.5백만원(⑥) × 30%(⑤) = 1.35백만원
- 민간 최종 배분 = 4.5백만원(⑥) - 1.35백만원(⑧) = 3.15백만원

∴ 최종 개발이익 배분은 다음과 같다.

단위 : 백만원, %는 총사업비 기준

구분	개발이익	민간참여자	公社	市 특별회계	비고
1차 배분	9(10%)	4.5(5%)	4.5(5%)	-	
2차 배분		4.5(5%)	-	-	민간제시이윤율
3차 배분		3.15(3.5%)	1.35(1.5%)	-	이익환원금액
최종 배분	9(10%)	3.15(3.5%)	5.85(6.5%)	-	